

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 대표이사

제 목 어린이보호구역내 통학버스 등의 승하차 관련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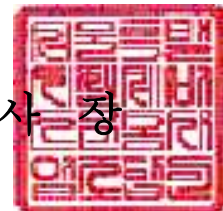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

2. 주지하고 계신바와 같이 지난 10월 21일 도로교통법 개정(일명 ‘민식이 법’)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조합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, 서울시교육청, 서울시청 등 관계기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정기운행 전세버스와 현장학습,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전세버스가 불가피하게 주정차하는 경우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의 특례대상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에서는 첨부와 같이 정기적 어린이 통학차량에 한해서 5분 이내에 잠시 정차할 수 있도록 “어린이보호구역 안심승하차존”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며 점차 확충(1741개 중 201개소 설치)해 나가고 있으나 비정기적 교통수요까지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바, 학교운동장을 이용하거나 학교 및 자치구 주차단속부서와 주차가능구간을 사전 협의하여 활용하도록 답변을 받았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붙임 : 서울경찰청 및 서울시 회신문서 요약 1부. [끝]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 사 장



부 장	라영석	실 장 (기획관리)	박호동	전무이사	박태환
시행	서전버조 21-205호	(2021.11.11)	접수	()	
우	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(교통회관 11층)			/ http://www.tourbus.or.kr	
전화	02-422-0019	전송	02-418-0071	/	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

■ 서울지방경찰청(교통지도부 교통관리과 교통시설운영계 담당 : 임중환 경사)

답변내용 요약

-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시행(10.21.)을 통해 주정차금지구간으로 지정되었으며, 법령개정 시 통학차량(스쿨버스, 학부모 등)을 이용하던 어린이의 불편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교통여건 및 학생 안전이 담보되는 구간에 통학차량이 승하차할 수 있는 구간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.
- 위와 같은 통학차량 승하차 구간 선정은 학기 중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통학차량 수요에 대한 것으로, 서울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요청하신 것과 같이 수학여행, 현장학습과 같은 비정기적인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승하차 구간을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.
- 다만, 위와 같은 학교 특별행사 시 이용되는 전세버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 운동장 활용 또는, 교통안전과 소통이 확보되어 주정차가 가능한 구간을 관할 경찰서, 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

■ 서울시(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담당주무관 : 김종민) 답변내용 요약

- 이번 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금지되었지만 통학 등 어린이 이용차량이 정차할 수 있도록 어린이승하차구역을 별도로 설치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.
- 즉 어린이승하차구역에서는 어린이승하차를 위한 차량에 한하여는 5분 이내 잠시 정차할 수 있습니다. 아직까지 모든 학교에 어린이 승하차구역이 설치되지는 않았으며 현재 최대한 많은 학교에 설치 중입니다.
- 아울러 어린이승하차구역이 미설치된 학교에서 설치되기 전까지 잠시 정차에 대해서는 학교 및 자치구 주차단속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라며 다만,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하는 경우라도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거나 차량소통을 지나치게 방해해서는 안되는 점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[끝]